

의안번호	2209681
의 퇴 인	백혜련의원
회 답 일	2025.06.05.
추계번호	25C2178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 (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)	-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(제2항) 8.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발전계획	의무규정
2	안 제55조의2 (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- 소아·청소년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- 소아·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- 소아·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황 - 취약계층 소아·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황 - 그 밖에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		-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정보를 공유하고,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3항) -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의 범위·방법·절차,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5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 (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)	○ 기시행으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-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26일 첫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“중장기 보건의료발전 방향 연구”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(용역비 1억원) - 개정안에 따른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은 신규 연구용역 내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55조의2 (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(안 제5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소아·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실태조사의 범위와 규모, 신규 정보시스템의 구축 여부 및 운영 규모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,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재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0~17세 아동의 건강·발달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실태조사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
 -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2023년 기준 6억원이었으며, 신규 실태조사를 신설할 경우 ‘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’(2023년 3억원), ‘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’(2024년 3억원) 등을 참고할 수 있음
 -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경우도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현행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가능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